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16-125호

망원동438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1. 2007.11.07.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 마포구고시 제2009-4호(2009.01.22.)로 사업시행인가, 마포구고시 제2015-203호(2015.12.03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된 망원동 438-46번지 일대 망원동438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8조 및 제4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동법 제49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택과(☎02-3153-9322)에 비치하여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6년 9월 13일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1) 종 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- 2) 명 칭 : 망원동438주택재건축정비사업
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- 1) 위 치 : 망원동 438-46번지 일대
- 2) 면 적 : 4,737.30㎡

다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1) 성 명 : 망원동438주택재건축정비사업(대표자 : 고현봉)
- 2) 주 소 : 서울특별시 마포구 방울내로11길 36 상명주택 A동 204호

라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6. 9. 9.

마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

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

대지면적 (㎡)	건축면적 (㎡)	건폐율 (%)	연면적 (㎡)	용적률 (%)	층수 (지하/지상)	주된용도	비고
4,737.30	1,260.197	26.86	9,435.885	199.99	1층/12층	공동주택 (아파트)	

2)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

구분	규모별 (㎡)	건립세대수	관리처분 대상자별 내역		
			조합원 분양	일반분양	보류지
공동주택	합계	149	132	16	1
	31.551A	18	12	6	-
	31.551B	13	13	-	-
	31.551C	9	9	-	-
	49.738A	21	11	10	-
	49.738B	25	25	-	-
	49.738C	18	18	-	-
	49.664	45	44	-	1

3) 신설 또는 용도폐지 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: 해당없음

4) 기존건축물의 철거시기 : 이주완료 후 4개월